『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!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미래통합당 김소양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
『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
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지난 2019년 11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1898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9월 1일을 '여권통문(女權通文)의 날'로 지정하도록 「양성평등기본법」이 개정되었습니다.

□ 이에 세계 여성의 날을 촉발한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시위보다 10년이나 앞선 역사적으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여성인권선언일을 서울시가 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기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여권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성평등도시 서울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,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